

'99년도중요재산취득(을숙도주차장부지)승인의견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유재산으로 '99년도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아래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사 업 명	취득구분	토 지						비 고
		소재지	지 목	필지	면 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소유자	
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	신 규	하단동 1149-4번지	잡종지	1	8,367	755,540	한국수자원 공사	주 차 장 특별회계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

'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사업명	취득구분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		소재지	지 목	면적 (m ²)					
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	신 규	하단동 1149-4번지	잡종지	8,367	755,540	'99. 4/4분기	을숙도 주차장으로 사용	사하구	주 차 장 특별회계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'99년도 중요재산 취득계획 총괄표

사 업 명	취득시기	토 지						비 고
		소재지	지 목	필지	면적 (m ²)	추정가액 (천원)	소유자	
울속도 주차장 부지 매입	'99. 4/4분기	하단동 1149-4번지	잡종지	1	8,367	755,540	한국수자원 공사	주 차 장 특별회계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을숙도 주차장 부지 취득

1. 취득사유

- 을숙도상단부 문화재지정 해제구역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문화휴식 공간 사용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함

2. 취득재산의 내역

사 업 명	재산 종류	소재지	지 목	면 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취득시기	주 관 부 서
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	토지	하단동 11494번지	잡종지	8,367	755,540	'99. 4/4분기	교 통 행정과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3. 매입방안

- 현 주차장부지(8,367㎡) ▷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입

4. 매입부지 활용계획

- 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문화휴식공간 사용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함
- 시설규모 : 주차대수 161면

5. 관련법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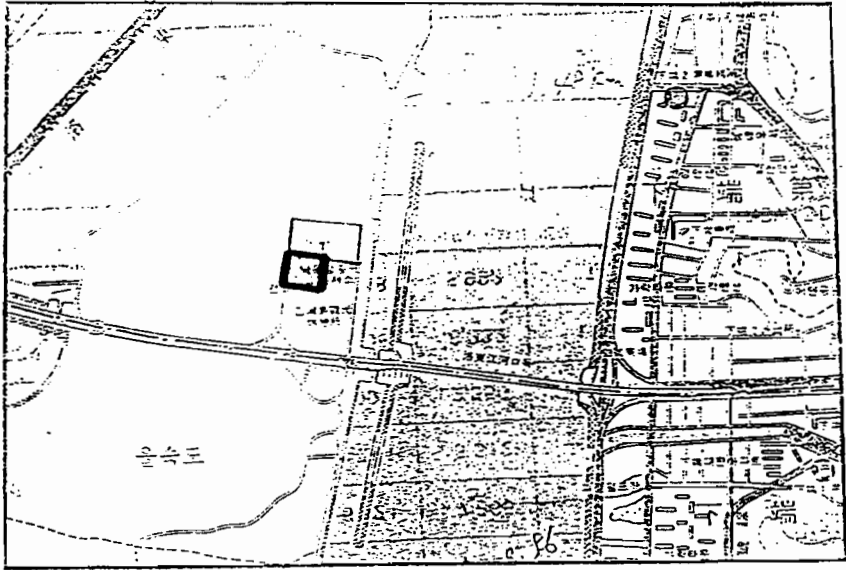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시행령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

6. 위치도 및 현황도 : 별첨

위치도 및 현황도

(하단동 1149-4번지, 8,367㎡)

위 치 도



현 황 도

